

의안번호	2208890
의 퇴 인	김선교의원
회 답 일	2025. 5. 28.
추계번호	25B1575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2항제5호의2 신설(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5의2. <u>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2	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신설(시·도 계획의 수립 등)	시·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3의2. <u>지역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3	안 제43조의2 신설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43조의3 신설(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(이하 “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”이라 함)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어린이, 장애인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 외에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을 병행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10조제2항제5호의2 신설(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• 미대상 － 현행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적응역량 제고 대책 등을 반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<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예산>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용역명</th><th>용역수행</th><th>수행기간</th><th>관련 예산</th></tr><tr><td>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</td><td>한국환경연구원</td><td>'21.12. ~ '22.10.</td><td>200</td></tr></table> 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	용역명	용역수행	수행기간	관련 예산	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	한국환경연구원	'21.12. ~ '22.10.	200																				
용역명	용역수행	수행기간	관련 예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	한국환경연구원	'21.12. ~ '22.10.	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신설(시·도 계획의 수립 등)	• 미대상 － 시·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적응역량 제고 대책 등을 반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*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~2023년간 159.5억원 보조 <지자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고 지원 현황> (단위: 개소, 억원)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지자체 수</th><th colspan="3">소요비용</th></tr><tr><th>계</th><th>국비 (50~70%)</th><th>지방비 (30~50%)</th></tr><tr><td>소 계</td><td>243</td><td>246.6</td><td>169.5</td><td>77.1</td></tr><tr><td>'21년~'23년 지원</td><td>223</td><td>236.6</td><td>159.5</td><td>77.1</td></tr><tr><td>한국환경공단 대행*</td><td>10</td><td>10.0</td><td>10.0</td><td>—</td></tr><tr><td>지자체 예산으로 수립**</td><td>10</td><td>—</td><td>—</td><td>—</td></tr></table> 주: *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위탁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10개 추진 ** 국고보조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지자체 예산만으로 수립 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	구분	지자체 수	소요비용			계	국비 (50~70%)	지방비 (30~50%)	소 계	243	246.6	169.5	77.1	'21년~'23년 지원	223	236.6	159.5	77.1	한국환경공단 대행*	10	10.0	10.0	—	지자체 예산으로 수립**	10	—	—	—
구분	지자체 수	소요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	국비 (50~70%)	지방비 (30~50%)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 계	243	246.6	169.5	77.1																										
'21년~'23년 지원	223	236.6	159.5	77.1																										
한국환경공단 대행*	10	10.0	10.0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자체 예산으로 수립**	10	—	—	—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안 제43조의2 신설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안 제43조의3제1항·3항 신설(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)	• 미대상 － 현재 '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 사업'을 통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적응인프라 구축 지원중 ※ [참고자료]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사업 개요 참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				
		<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 사업 예산: 2022~2026년> (단위: 백만원)				
		기금·회계명	세부사업 (내역사업)	2024	2025	2026
		기후 대응 기금	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(6331-301) - 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 사업	10,000	10,000	11,327
		자료: 기획재정부				
5	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(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				

2. 상세 사유

가.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(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¹⁾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경우,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 및 조사 확대실시를 추진 중(수행기관:한국환경연구원²⁾)으로, 2025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으며([참고자료1] 2025년 기후위기 적응 민간대행사업(한국환경연구원) 개요 참조), 2026년에는 실태조사 전국단위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및 결과 분석 등에 예산 3억 5,000만원을 편성함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12의3.“기후위기 취약계층”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부정적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가. 노인, 영·유아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
 나. 옥외근로자,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자 등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
 다.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화주택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
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

2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

[표 1]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기금·회계명	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2026년 예산
기후 대응 기금	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(6331-301)	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(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및이행지원)	·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:350 -실태조사전국단위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및 결과분석:300 -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: 30

자료: 기획재정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여부 및 규모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대상이 광범위한 반면에, 실태조사의 범위, 시기·주기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나.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(안 제43조의3 제2항 신설)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[표 2] ‘취약계층’ 및 ‘기후위기 취약계층’의 정의 및 범위

용어	정의
취약계층 (안 제2조제12호의2)	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기상이변·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·지역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·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·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·산업과 그 종사자 등 기후위기의 직·간접적 영향에 취약한 산업·계층·지역 등을 말함
기후위기 취약계층 (안 제2조제12호의3)	기후위기에 따른 부정적 기후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노인, 영·유아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나. 옥외근로자,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자 등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 다.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화주택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

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

- (생물학적 취약계층) 폭염·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, 영·유아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, 장애인 등
- (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) 옥외근로자·기초생활수급자·노숙자 등
- (자연재해 취약지역 거주자) 상습수해지역·노후화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

□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개정안에서 맞춤형 교육 및 홍보의 내용, 시기·주기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2025년 기후위기적응 민간대행사업(한국환경연구원) 개요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- 사업명 : 2025년 기후위기적응 민간대행사업(한국환경연구원)
- 사업기간 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사업목적
 - 기후위기 시대, 민생·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 추진
 - 중앙부처·지자체·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의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, 효율적 적응대책 시행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
 - 기후위기에 더 큰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계층·취약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, 지원사업을 통한 적응 실효성 제고
- 주요 사업내용
 - 국가 적응대책 수립 및 주류화 지원
 - 지자체 기후 적응 및 취약성 개선
 - 적응주체별 적응역량 강화
 - 국내외 적응 협력 및 확산
 - 총괄 운영 및 지원
- 수행기관 :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
- 총괄

사업		세부사업	
구분	사업비 (백만원)	구분	세부사업비 (백만원)
국가 적응대책 수립 및 주류화 지원	640	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	460
		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지원	40
		기후적응 주류화 지원 및 기반 구축	100
		국가 기후리스크 현황 조사분석	40

사업		세부사업	
구분	사업비 (백만원)	구분	세부사업비 (백만원)
지자체 기후 적응 및 취약성 개선	980	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	200
		적응-감축 공편익 평가 방법론 마련	30
		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 강화	330
		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사업	420
적응주체별 적응역량 강화	640	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지원	270
		산업계 적응 역량강화	290
		기후보험 도입 및 기후물가 지원 방안	80
국내외 적응 협력 및 확산	670	기후적응 네트워크 및 협력	300
		기후위기 적응 교육·홍보	370
총괄 운영 및 지원	165	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운영	165
합 계 (백만원)			3,095

□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 강화 사업 개요

사업명 (2025년 기준)	예산(백만원)
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대책 강화	330
1)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행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	60
-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행체계 구성	20
-기후위기 취약계층 가이드라인 마련	40
2)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범조사	150
-홍수, 폭염 대상 조사방안 마련	60
-대면 및 온라인 기반 실태조사 시행	90
3) 기후위기 취약계층 조사구(중점관리지역) 분석 및 선별	60
4) 실태조사 관련 컨설팅 운영	60

자료: 2025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(한국환경연구원)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행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
 -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행체계 구성
 - ※ 이행주체별 역할 및 이행체계 구성, 조사결과 DB화 방안, 지자체 적응대책 적용방안 등 구성
 -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수행(지역 담당자, 기후취약계층 담당 복지사 등)
 - 기후위기 취약계층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
 - 기존 유관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사례조사,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행체계·조사지표 및 설문지·표본집단 선정·조사결과 보고형식 등 포함
 -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의 현장 피드백 반영 등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
-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범조사
 - 홍수, 폭염 대상 실태조사 지표 및 설문지 마련
 - 시범지자체 2~3개소 선정(농어촌 1개소 이상 포함) 및 도시·농어촌 개별특성을 고려한 조사체계 구축
 -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유형을 반영한 표본집단 선정 및 층화추출 방안 마련·적용
 - 대면 및 온라인 설문 기반 실태조사 시행
 - 조사결과의 결과지표화 및 시공간 통계·DB 분석
- 기후위기 취약계층 조사구(중점관리지역) 분석 및 선별
 - 홍수·폭염 발생, 사회경제, 정주환경을 고려한 조사구 기반DB 구축
 - 홍수·폭염 대상 조사구(중점관리지역) 선정체계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적용
- 실태조사 관련 컨설팅 운영
 - 컨설팅 및 교육자료 마련 시행, 교육세미나 추진
 - 실태조사 추진 지자체 컨설팅(지자체 담당자 대상 자료공유 및 컨설팅 시행)

○ 연차별 사업 내용 비교

2024년	2025년	2026년
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행체계 마련 －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표 구축(폭염) － 중점관리지역 선정방안 마련 및 실태조사 시범적용 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범운영 － 시범지자체 운영(서울, 부산) ●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지자체 담당자 설문 등 시행)	● 실태조사 이행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확대 적용 － ‘24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수행체계 보완 및 시범지자체 확대 운영(농어촌 지역 추가) － 홍수 관련 설문지 추가 ● 실태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 및 지자체 컨설팅 ●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추출된 중점 지원대상과 지원정책 간 연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	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운영 및 조사표 고도화 － 조사구 확대방안 마련 － 조사표 고도화 － 지역 조사결과 분석 등 시행 ● 중점관리지역을 고려한 조사구 확대 ● 실태조사 시범지역 운영 확대 ● 실태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 및 지자체 컨설팅 ● 실태조사 결과 기반 맞춤형 정책 강화방안 마련 － 지역별 실태 격차 분석 및 정책 제언

[참고자료 2]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사업 개요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□ 사업 개요

- **(사업목적)** 취약계층 및 지역에 적합한 지원사업 유형을 적용한 적응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기후 탄력성 증대
- **(사업근거)**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제38조, 제3차('21~'25)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
- **(사업유형)** 지자체 자본보조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**(사업비)** 총 190억원(국비 95억원, 지방비 95억원)
 - * 국비 100억원(보조사업 95억원, 컨설팅 및 가이드 마련 등 5억원)
- **(사업기간)** '25년 (* '21~, 1년, 단년도 집행)
- **(사업계획)** '25년도 지원방안 마련 및 공모지침안 확정('24.1~6) ⇒ 지자체 공모('24.7~8) ⇒ 선정 평가('24.9~10) ⇒ 결과 통보('24.11) ➡ ('25) 사업설계 ⇒ 공사·준공 ⇒ 정산
- **(지원유형)** 폭염, 한파,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·지역의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해 6개 사업유형 모델 제시

□ '25년도 지원사업 유형

번호	사업유형명	세부내용	지원대상
1	취약가구·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	▶ 폭염대응 실내 열환경 개선 • 건물 옥상·지붕·외벽에 차열페인트 도장	개별 취약가구, 취약계층 이용시설
2	결빙 취약지 개선사업	▶ 폭설·한파 취약지 결빙 방지사업 • 경사진 골목길, 계단 등 취약지역 보행로·이면도로에 열선, 발열섬유 등 시공	취약계층 밀집지 내 결빙 취약지
3	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	▶ 폭염 쉼터 조성사업 • 그늘조성, 녹지·식재 조성, 차열페인트도장(시설·장비표면), 쿨링설비(물입자 분사시설 등), 음수시설, 자연통풍 형성, 기존시설·구조물 재배치 등 복합 적용	취약계층 밀집지 내 어린이놀이터, 공원, 광장 등
4	녹색공간 조성사업	▶ 건물 녹화조성 • 옥상녹화, 벽면녹화(부착식), 그린커튼 등 3종	공공성을 갖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

번호	사업유형명		세부내용	지원대상
5	야외 근로자 컴퓨터 설치사업	농촌형 쉼터(에너지자립형) 설치사업	▶ 폭염·한파 대응 농촌형 쉼터(에너지자립형) • 대규모 농경단지 내 길이 6m × 폭 2.6~3m × 높이 2.4~3m 규격의 휴게시설 설치(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) • 신재생에너지*를 통한 에너지 자립 *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약 3kW 설비용량	야외 농업근로자
		야외 공공 근로자 쉼터 설치사업	▶ 폭염·한파 대응 쉼터(고정형) • 고정형 쉼터로 정수물품 배정 불필요 • 인근 전력망 연결을 통한 전력공급 가능 • 신재생에너지*를 통한 에너지 자립 *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약 3kW 설비용량	공원 등 한정된 공간범위 내 야외 공공근로자
		야외 공공 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사업	▶ 폭염·한파 대응 이동식 쉼터(도로주행형) • 차량용 트레일러 구조물(차량 정수 배정 필수) •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연계 활용	이동이 필요한 야외 공공근로자
6	소규모 사업장 주변지역 적응인프라 조성사업		▶ 공장-주거 혼재 지역에 적응시설 복합 조성 • (환경오염·폭우) 그린인프라·LID사업(녹지·식생, 침투·저류 등), 생태복원(훼손지, 유수지 등), 기타시설 등 복합 적용 • (주거개선) 차열페인트 시공, 녹화 등 복합 적용 • (폭염·한파) 마을주민·근로자 이용 쉼터 조성(놀이터 등), 마을 내부·주변부 녹지·식생 조성, 결빙취약지 개선 등 • (물순환) 생태보행로(녹지대+빗물저류), 식생수로 조성	개별입지 공장 집약지 내 공장-주거 혼재지 또는 노후산업/공업단지와 주거지 인접지역
지자체 제안			▶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사업·기술 발굴·제시 ※ 타 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은 제안대상에서 제외	—